

製造物責任法の立案과 그 對應方案 研究

—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活性化方案을 中心으로 —

黃 哲 洪

(保險開發院 特種保險 擔當役)

目 次

I. 序

II. 製造物責任法理의 變遷

1. 製造物責任의 概觀
2. 英・美國의 變遷概要
3. 韓國・日本의 法理現狀

III. 製造物責任法の立法化와 國際的 統一化 傾向

1. 美國・유럽(EC)의 경우
2. 韓國・日本의 경우
3. 韓國의 試案에 대한 比較法的 分析

IV.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現況

1. 約款 및 料率體系(88年 以前)
2. 改正約款 및 料率體系(88年 以後)
3. 約款上의 主要免責危險에 대한 점검

V. 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모델의 定立

1. 保險料率水準의 決定方案
2. 保險料率體系의 確立方案

VI. 結語

I. 序

1962年 케네디 미대통령이 聯邦議會에 제출한 「消費者利益保護에 관한 特別敎書」는 소비자보호운동에 현대적 사고를 부여하는 노력으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소비자운동을 소비자의 자기보호라는 소극적 방어인식의 구도에서 소비자의 主權과 權利意識에 기초하는 적극적인 자기방어와 사회감시라는 차원으로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제공하기에 이른 것이다.¹⁾ 우리나라는 이보다는 다소 뒤늦게 1986년에들어 소비자의 基本權益을 보호하여 소비생활의 向上과 合理化를 꾀하는 消費者保護法の 제정과 同目標의 실천방안으로써 韓國消費者保護院을 設立한 바 있다. 그러나 同法은 세계10대 交貿國에 걸맞는 유통경제의 메카니즘에 대한 능동적인 대체기능이 力不足하다는 지적이 있다. 製造物의 製造, 輸入 및 판매행위의 主體인 사업자의 의무(法

1) 「President Kennedy's Bill of Right」로서 4대 소비자권리, 즉 「the right to safety, the right to be informed, the right to choose, the right to be heard」를 제창한 바 있다. (박일수, 《소비자운동의 확산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p14-16)

15-17), 국가 및 地方自治團體의 의무(法5-14) 등을 總體的으로 規律하고있지만 이는 平面的인 包括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아니라 被害救濟의 履行確保方案(法39-46)등은 현실적으로 그 강제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현재 製造物別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는 소비자보호법외에 電氣用品安全管理法, 工業標準化法, 工產品品質管理法 및 가스관련법(도시가스사업법43,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33, 고압가스안전관리법25)등으로 多元化되어 있고 가스관련 3개법을 제외한 여타의 법에서는 피해구조방안에 대하여 거의 차단된 양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立法의 실태는 外皮만 자못 요란할 뿐 그 內實에 있어서는, 특히 피해구조방법에 관한 한 民事訴訟 등에 全的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보호의 진공상태를 드러내는 현실이다. 더욱 무역보복의 핵병기로 불리우는 美綜合貿易法案 수퍼 301조에 의한 미국의 對韓 通商開放壓력과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등은 18세기의 제1次 문호개방에 뒤이은 제2의 문호개방이라 이름하리만큼 한국경제에 끼치는 파장은 실로 깊고 넓게 드리우리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같은 工產物을 비롯한 농수산물 등의 수입개방과 더불어 大量生産·大量販賣·大量消費로 이어지는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構造的인 유통체제의 特性으로 말미암아 소비자보호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조명과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自明하다.

소비자의 基本的인 權利는 모든 상품의 使用·管理·占有過程에서 빚어지는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안전성의 確保, 즉 事前的規制制度和 더불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身體 및 財產上의 피해로부터의 效率的인 事後的規制制度가 完備됨으로써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事前的規制制度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규를 통하여 品質表示(「검」, 「품」, 「電」), 品質檢査, 品質管理改善 등으로 나타나지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事後的規制制度는 全般的으로 방기된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경제기획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立案된 「製造物責任法試案」을 다른 나라의 그것과 比較法的인 방법으로 分析·檢討하고 피해구조의 이행확보방안으로서 전세제적으로 승인되어 營爲되고있는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現況과 그 法理的 변천과정을 통한 실무적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同試案이 현실화되는 경우 미진한 同保險의 約款 및 料率體系의 새로운 모델을 提示하는 등 그에 대한 다각적인 對應方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製造物責任法理의 變遷

1. 製造物責任의 概觀²⁾

18세기에 이르러 역사가 인간에게 베푼 최고의 선물은 產業革命과 프랑스市民革命으로 가능할 수 있다. 兩大革命은 이제까지 질곡처럼 드리워진 封建制度를 克服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自由放任主義의 순수한 이념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所有權의 절

2) 歐美的「products liability」에 대하여 법조계, 學界 또는 言論界에서는 이를 一般的으로 製造物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는 反面(製造物責任法試案의 경우 「製造物責任保險契約」이라 明記하고있다), 보험업계는 실무관행상 生産物이라 통칭한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두용어를 굳이 統一하여 쓰지않고 각분야별로 그 쓰임에따라 두루 混用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주의, 過失責任主義 및 계약자유원칙등 近代私法의 논리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특히 산업혁명은 18세기 이전의 家内手工業의 단순생산 양태에서 벗어나 기계공업화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바 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및 19세기에 걸친 産業經濟構造의 개편을 통한 세계산업질서는 첨단기술 및 종합적인 메카니즘에 의한 대량생산, 대량공급 및 대량소비의 이른바 3Mass시대로 진입한다. 이러한 현대의 산업구조는 고도로 개발된 기술의 힘을 입어 대량으로 조작되는 제조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처럼 생산되는 제조물 역시 조직적이고 방대한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쳐 최종 이용·소비자에게 판매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소비자나 다른 제3자에게 生命·身體 또는 財産權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서 製造物の責任(product liability) 또는 제조자의 책임(manufacturer's liability)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19세기초 이전의 제조자의 책임은 사람의 안전에 「元來의으로 危險한 것(inherently dangerous)」 또는 「切迫한 위험이 있는것(imminently dangerous)」에 의한 손해만을 인정할 뿐 그밖의 손해는 契約關係의 성립여부(privy of contract)등에 의하여 부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같은 경향은 당시의 사회적 여건, 시대적 조류와 一致하는 바 당시로서는 자본주

의경제의 확립과 산업보호의 국가적인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責任을 차단하는 추세였으나 근대시민사회가 요구하는 社會的正義와 衡平에 反하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19세기초 以來 不法行爲의 過失責任을 契約關係에 의하여 制限하지 않는 과실책임주의원칙의 확립과 나아가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과실의 推定 또는 立證責任의 轉換에 따른 中間的責任³⁾ 契約法上的 保證責任 및 嚴格責任理論 등이 社會的 環境변화에 걸맞게 變移되는 점을 살필 수 있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자책임에 있어 그 責任의 범위를 한정하는 中心的 개념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은 사실상 확립된바 없다. 그러나 이른바 Greenman Rule⁴⁾, Restatement of Tort & 402A의 규정⁵⁾ 또는 일본의 製造物責任法要綱試案 제2조 제3항⁶⁾ 등 여러 내용을 규합할 때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통상의 用法에 따라 제품을 사용한 결과 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비합리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초래되는 경우 당해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같은 製造物의 고유결함을 設計上の 결함(design defect), 製造上の 결함(manufacturing defect), 指示 및 警告上の 결함(defect in direction and warning) 및 開發途上の 결함(undetected defect) 등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⁷⁾

결국 民事責任의 이념이 社會正義 및 衡平의 실

3) 權龍雨, 《不法行爲論》, 考試院, pp271~280

4) Greenman vs. Yuba power product co. 사건에서 Traynor판사가 제시한 「제조물이 사람에게 피해야기의 원인을 제공할 때 결함이 있다」고 판시한 내용

5)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상태(any product 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6) 75.8월 제조물책임연구회의 試案「제조물을 통상예견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生命·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야기시킨 제조물의 하자」

7) 浜上則雄, <製造物責任の 諸問題 (2)-欠陥>, 《現代 損害賠償法講座(4)》 pp341~346

현에 궁극적인 의의가 있는 만큼 제조물의 책임문제도 제조물의 개념, 그 범위 및 결함의 정의문제,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人的損害, 物的損害 또는 정신적손해 등 손해의 범위 및 종류의 확정문제,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사이의 因果關係 立證問題, 責任의 主體問題,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이용소비자, 제조물수령자 또는 제3자중에서 어느범위까지 限定할 것인가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문제 등을 새로운 법정서에 의하여 제정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實定法 규정과 이러한 해석론과의 사이에 법해석상의 기본적인 이론으로서의 合法性과 目的性과의 조화 내지는 구체적 타당성과 法的安定性과의 균형, 이에 대한 立法論 제기의 필요성과 더불어 前向的으로 검토할 계제인 듯하다. 더우기 제조물 책임의 문제는 個別的이고 특수한 영역의 손해배상문제로서 그 적용법리를 一般化함에 어느 一定의 限界가 있기 마련인 때문이다.⁸⁾

2. 英・美國의 變遷概要

英美의 제조물책임이론은 判例法에 의하여 形成, 發展했고 흐름의 대강은 크게 契約法的 法理構成과 不法行爲의 法理構成으로 나뉘나 사실상 이는 傳統的理論 내지 規定의 準用에 의한 구성과 새로운 論據에 기초한 再構成理論으로 보완되어 왔다. 결국 沿革的으로 살펴볼때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은 과실책임(negligence liability), 保證責任(warranty

liability)⁹⁾ 및 不法行爲法上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n tort)의 3가지 法的 追求方式으로 展開된 터이다.

1842年 영국의 Winterbottom V. Wright 사건(10M&W.109)은 마차의 전복으로 부상을 입은 원고(우편 배달원)와 마차의 제조자인 피고사이에 계약당사자관계(privy of contract)가 없는 점을 지적, 쌍방간의 손해배상책임을 否認하는 최초의 判例가 되었다. 이 판례를 통하여 법원은 마차제조자와 제신관계당국사이의 계약만으로는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는 被害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하지않을 뿐 아니라 설혹 마차제조자의 제조과정상 과실이 있다 해도 계약당사자관계가 아닌 피해자에게 不法行爲上的 責任을 負擔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Winterbottom V. Wright사건의 원칙은 기업의 維持, 보호, 발전이라는 국가정책적인 측면으로서는 큰 공헌을 끼친 바 있으나 이용·소비자 측면에서는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反衡平的 원칙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Thomas V. Winchester(6N.Y.397.1852) 사건에 의하여 수정을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에서 쌍방간에 계약당사자관계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행위¹⁰⁾는 「他人의 生命에 切迫한 危險(imminently dangerous)을 미치는 과실행위」인 점을 들어 피고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였고 아울러 毒劇物, 洗髮劑, 총기폭발물 등 사람의 안전에 「本來的

8) 林正平 <제조물 책임법리의 比較法的考察>, 《司法行政》334, 88, pp36-37

9) 일반적으로 擔保責任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보험실무상의 관행적인 용어인 保證責任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10) 藥品製造業者가 毒劇物에 라벨을 잘못 붙인채 약국에 이를 공급하였고 약국에서는 라벨의 표기대로 患者에게 散賣하였는바 결국 독극물을 복용하게된 患者는 身體에 異常이 發生, 患者가 라벨을 잘못 붙인 약품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11) Longmeid V. Holliday사건(155Eng. Rep. 725,1851)

으로 危險한 것(inherently dangerous)」¹²⁾에 이르기까지 限定的으로 그 범위를 擴大하는 경향을 보였다.

¹²⁾ 또한 제조물책임법리의 전개과정상 기념비적 판결로서 평가되는 1916年 Macpherson V. Buick Motor Co.(111N E 1050, 1916)사건에서는 위에서 밝힌 特定危險物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자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과실만 있으면 그 제조자의 모든 제조물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명실상부한 과실책임이론이 확립되는 전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上述한대로 과실책임에 의한 法理構成은 契約關係의 존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만 過失의 立證問題는 극복되지 않는 장애물로 남았다. 一般不法行爲法の 원칙상 과실의 입증문제는 被害者가 부담하는데 이는 제조물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와같은 입증책임의 困難을 구제하기위하여 「事實推定の 원칙(Res Ipsa Loquitur)」 「過失推定の 원칙(negligence perse)」등을 통한 舉證責任의 轉換理論을 모색하게 되어 이로써 엄격책임이론의 전단계인 保證責任理論을 도입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明示的保證責任理論(express warranty)에 의한 代表的 判例로서는 1932年の Baxter V. Ford Motor Co.(12p.2.d 409Wash. 1932)와 1960年の Randy Knit wear V. American Cynomid Co.로서 제조자의 不實表示(public misrepresentation)에 대한 責任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1960年の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 Co.(32xl. J 358) 사건에서는 모든 賣買는 公序良俗에 反하는 免責約款이 없는 限 明示的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상품은

商品性(merchantability)과 特定目的性(fitness for the particular purpose)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保證責任의 法理는 保證概念의 필수요건인 契約關係의 존재가 필요하며 法院은 어떤 경우 例外的으로 契約關係를 부인하거나 많은 擬制나 類推를 이용하여 형식요건을 갖추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만¹³⁾ 궁극적으로 契約關係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비록 과실책임의 立證問題는 해결되었으나 契約關係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는 결과가 빚어진다. 여기에서 보증책임이론의 법리구성을 취하면서 契約關係의 요건, 契約違反事項의 通知要件 등을 補充하며 보증책임이론에서의 免責約款을 反社會的 行爲로서 무효라고 하는점¹⁴⁾ 나아가 最廉價損害回避者의 理論 등과 접맥, 엄격책임이론(strict liability)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法理進展의 傾向에 따라 1944年 Escola V. Coca-Cola Bottling Co. 사건(24Cal. 2d 453, 150 p.2d 436)과 1963年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59Cal. 2d 5 7)사건에서 엄격책임이론을 인정하게되는 里程碑의인 判決이 있게 되며 各國 賠償責任法理의 本流로서 흐르게 되는 것이다.

3. 韓國・日本の 法理現象

우리나라는 英美法에서 보는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實定法の 제정이나 여러갈래의 判例 등이 축적, 確立된 바 없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문제의 追及을 위하여는 民法

12) 이에 대한 判例로서는 毛洗髮劑의 제조자(George V. Shivington 5L.G.I.1869) 사당다리, 建製者(Devlin V. Smith 89 N.y. 470, 1882), 커피주전자제조자(Statler v. George A. Rny Mtg. Co., 88N.E.1063, 1909) 權龍雨, op.cit.p275

13) William L.Prosser,《Handbook of the Law of Torts》, 41 p507. 林正平. op. cit. p38에서 再引用

14) Dix W. Noel & Jerry J.phillips, 《product liability》, 74. p91

理論에 의한 접근, 즉 一般不法行爲規定(民 750, 일 709), 工作物占有者, 所有者의 特殊不法行爲(民 758, 일 717) 등의 不法行爲責任理論과 瑕疵擔保責任(民 580-581, 일 570) 債務不履行責任(民 380, 일 415) 등의 契約法的理論으로 구성되나 소비자보호의 측면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無過失責任法理에 의한 접근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不法行爲理論에 의한 모색은 현실적으로 제조자의 과실 및 因果關係의 立證이 용이치 않는 등 一般不法行爲規定의 고전적 또는 전통적인 법해석에서는 피해자의 구제기능이 불완전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現代의 해석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자와 이용·소비자간의 형평을 도모함에 主眼을 두고 있다. 一般不法行爲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자의 과실이 一應(primafacie) 있는 것으로 推定하되 反證의 立證負擔을 제조자에게 두는 立證責任의 전환이론과 결함과 사고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相當因果關係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추정하고 제조자의 反證에 의하여 면책되는 公害訴訟事件判例上的 蓋然性說이 널리 認定 되는 추세다.¹⁵⁾ 또한 特殊不法行爲인 工作物責任은 공작물의 安定性에 대한 社會的 신뢰에 反하는 결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인 점을 감안, 無過失責任으로 占有者 및 所有者에게 대응하고 있는바, 사회적 신뢰가 土地의 공작물에 못지 않

은 動的인 제조물에 대하여도 「定着性理論」을 회피, 이를 제조자 책임에 이르기까지 類推適用하는 傾向도 있다.¹⁶⁾

契約法的 構成論理인 하자보증책임은 피해자가 賣渡人(제조자)의 과실을 立證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인 거래의 신속성을 떠받치는 6월의 除斥期間(民 582, 商 69)과 더불어 종국적인 해결이 용이한 점이 있어 제조물책임의 追及을 위한 전용논거로 삼는다. 그러나 하자보증책임에 의하여 전보될 손해 배상의 범위가 현재의 通說인 신뢰이익에 한정되는 경우 제조물책임에서 특히 강조되는 하자결과손해에서 이를 충분히 포함할 수 없는 難點이 있다. 또한 契約法的 접근방법인 債務不履行責任法理의 경우 제조자가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더라도 현대와 같은 다단계적 상품유통구조하에서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품에 관한 明示的 品質保證을 하며, 설혹 明示的 品質保證을 하지않더라도 묵시적 품질보증을 하고 있다는 일반적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품질보증을 違反하게 되면 이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과실입증책임 또한 제조자에게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¹⁷⁾ 그러나 同理論에서 전보되는 損害는 主로 財產的 損害에 限定되고 제조물책임의 主된 對象인 사람의 生命·身體에 대한 손해는 그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一般的인 경향이므로 이의 해소방안 또한 용이치 않는 일이다.¹⁸⁾

15) 有泉亨, <生産物責任論(沿革と比較)>, 《現代損害賠償法講座4》, pp235-237, 申寅植,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관한 考察》, 서울大大學院碩士學位論文 pp43-44에서 再引用

16) 竹內啓界, <メカ-カ-の責任と保險>, 《현대손해배상법 강좌8》p118

早崎健, <生産物責任>, 《新種, 自動車保險講座I》, 日本評論社, p123에서 再引用.

17) 徐圭錫, 《製造物責任保險研究》, 學文社, 81, p91.

18) 魯東表,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관한 연구》, 서울大 석사학위論文, pp41-42

Ⅲ. 製造物責任法の立法化와 國際的 統一化 傾向

1. 美國・유럽의 傾向

76年 1차 賠償責任保險의 波動에 이은 85年の 2次 波動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Sorry, your policy is canceled」이라는 題下의 TIME紙(86. 3. 24)는 生産物賠償責任保險에 加入하여오던 Connaught製藥會社の 경우 양등하는 保險料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工場을 폐쇄, 百日咳嗽 신이 품귀현상을 빚는가하면 Beech항공기제조회사는 同社가 판매하는 비행기 한대당의 保險料가 80,000달러로 前年對比 무려 수십배인 바람에 제조중 단사태까지 고려하는 등 미국 사회경제체제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生産物 등 賠償責任保險의 실체와 위기극복 방안을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사태의 악화가 擴散되자 연방정부는 商務省 및 11개 관계기관과 합동, 「Federal interagency task force」(176, 4, 10)를 설치하여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77, 11, 1)同報告書 안에는 生産物책임에 대한 各州의 통일적인 법적용을 위하여 규범적 내용의 統一生産物責任모델법(The Model of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극히 一部の 州에서만 위 모델법을 채택함으로써 모델법제정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 걸친 제조물책임법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한 권고적 의미의 모델법 형태가 아니라 法的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聯邦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하기 위하여 一聯의 法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85年 2次 波動의 진화에 부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¹⁹⁾

당면한 위기(Product liability crisis)의 근본적인 타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法務省中心의 Working Group 설치(85. 10), 제1차보고서(86. 2)²⁰⁾ 및 제2차 보고서(An update on the liability crisis Mar. 1987) 작성보고에 그칠 뿐 기존에 成案된 統一法の 全國的 施行에 관하여는 별다른 代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同報告書는 위기의 動因을 보험업계의 경제적 이유(Cash-flow underwriting)와 不法行爲法的 방만한 엄격책임문제로서 인식, 연방 및 州政府과 法院의 공동작업으로 8個項의 具體方案을 적시한 바 있다.²¹⁾

한편 85. 7월 EC閣僚理事會는 EC블록권의 12個 국가가 88. 7월까지 國內의 제조물책임관련법규를 정비토록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EC指針²²⁾을 채택하였다. 이는 결함제품의 책임소재에 관한 國內法이 加盟國마다 相異함에 따라 共同市場內에서 경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商品의 자유로운 移動에 영

19) 李相程外, 《製造物 責任에 관한연구》, 韓國消費者保護院, p26

20) Report of the tort policy working group on the causes, extent and policy implication of the current crisis in insurance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in Feb.

21) ①制限의인 過失責任의 認定 ②科學的, 醫學的 증거와 이에따른 인과관계의 인정(賠償員의 동정 판결배제) ③ 비경제적인 賠償補償金의 제한 ④高額賠償金의 分割支給 ⑤연대책임의 폐지 ⑥변호사성공보수제의 체감화제도 도입 ⑦重複賠償金의 減額 ⑧任意合意解決機構(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의 도입, 보험감독원, 《제4차 損保共同海外研修報告書》 89, pp111-112

22)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향을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결함제품으로 인한 人的 또는 財産의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를 서로 다르게 보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결함제품의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責任을 規定할 必要性이 대두되고 그 대처방안으로써 全體 가맹국 간에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指針(Directive) 형태로 發議하게 된 것이다.²³⁾

EC지침은 가맹12개국에 통보된 날(85.7.30)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88.7.30까지 國內法을 整備, 補完後 施行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침19) 이에따라 영국, 그리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덴마크, 서독 등이 國內立法을 실현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議會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同法이 공포되는 때까지 이 指針은 그 效力이 지속한다. 同指針의 內容에 대한 一般的 評價는 「不充分한 調和」로서 집약된다. 각국간의 현저하게 다른 법질서와 각계층간의 심각한 利害關係의 상충속에서 어렵게 도달한 타협으로써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위험의 배제(지침1, 95년 재론예정), 제조자의 면책사항(지침7), 身體事故에 대한 責任限度額의 認定(지침16, 7,000만 ECU)등과 특히 무과실 책임(지침1)에 대하여 첨예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²⁴⁾

2. 韓國・日本の 傾向

60년대들어 스몬病(亞急性背脊髓視神經病)事件, 가네미油症事件등이 사회적관심을 불러일으키고 市場의 開放化와 더불어 輸入商品에 대한 제조자책임의 追及問題가 各界에서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先進 여러나라에서 製造物 責任法制가 조정 또는 정비되고 있음에도 일본만 유독 이를 태만히하는 경우 국제거래의 公平性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시대적인 흐름을 수용, 立法化의 傾向을 긍정하는 자세전환이 있었다. 또한 산업계나 소비자단체들도 EC加盟國이 모두 法制化하는 추세라서 先進國中에서 관련법규를 정비하지않는 나라가 일본뿐이라는 점을 지적, 변호사단체와 더불어 法制化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노력의 소산으로 「製造物責任法要綱試案」(製造物責任研究會75, 8, 28)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뒤늦게 82. 2월 최초의 製造物 責任法案을 제110회 임시국회(議案 제231호. 82. 2, 19)에 發議하였으나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상(시기상조) 잠정적으로 유보된 바 있다.²⁵⁾ 그러나 90. 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심각성과 법규정의 未備, 그리고 제조물책임법 制定의 세계적 傾向을 좇아 경제기획원에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同建議書에는 全文18個條項으로 구성된 製造物 責任法試案²⁶⁾을 첨부, 조속한 立法推進을 촉구하였으

23) 韓國消費者保護院, 《各國製造物責任法 및 法案》, 정책연구자료 89-01, p19

24) 韓・獨・日 國際學術 심포지엄, 《生産物責任(produkthaftung in Asienund Europa)》, 89, 10. pp7-8

25) 全順圭의원外 25인으로 發議된 同法案은 총14개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조자의 무과실책임, 결함 및 인과관계의 推定, 과실상계의 특칙, 손해배상조치 및 保障事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6) 同法試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이 分析할 수 있다.

(1)제조물・제조자, 결함의 정의(法2) (2)무과실책임주의의 채택, 개발위험(State of art) 항변의 불인정(法3) (3)連帶責任(法4) (4)결함 및 因果關係의 推定(法5) (5)징벌적배상금제도(punitive damage system)의 도입(法 7) (6)소멸시효(Statutes of limitation), 사고로인한 請求時限 및 耐用年數의 制限(法8) (7)損害賠償措置, 製造物 責任保險契約, 保證保險契約 및 供託(法13) (8)第3者引受 및 代表當事者訴訟制度(法14, 15)

며(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 514-117호, 90.1.8)이에 대하여 當局은 「당원은 귀원이 입법정책건의한 제조물책임법시안을 참고하여 동입법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경제기획원 유소10340-17, 90.1.15)

同法案의 立法化에 대하여 보호원은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生命, 身體, 財産에 대한 피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기때문에 事前的 규제의 강화와 함께 事後的救濟方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과 後者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現行法規의 未備가 큰 장해요인임을 지적한뒤 이의 補完方案을 강구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비추어 제조자책임을 다른 외국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法體制가 다른 외국과 다르다면 同一製造者가 同一商品의 결함으로 각기 다른 責任問題가 발생하며 안정성시험이 끝나지않는 상품의 수입, 국내기업의 內輸入選好問題등을 지적하여 조속한 立法化를 촉구하고있다.(同정책건의서 참조)

3. 韓國의 試案에 대한 比率法的 分析

(1) 製造者(法試案 1-②)

製造物責任을 부담하는 主體로서 「完成品の 제조자, 原材料 또는 部品の 제조자 및 제조물에 그 성명, 商標 기타 識別할 수 있는 標識를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者」등을 총칭한다.(法 2-②) 원론적으로 제조자의 要件은 完成品, 原材料

및 部品인지를 묻지않고 당해 제조물의 생산을 業으로하는 者와(일본2-(2)-①, EC3-①) 제조물에 商標, 商號또는 자기를 表示하는 명칭을 부착해서 이를 유통시키는 納品業者나 유통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일본2-(2)-②, EC3-①) 특히 後者의 경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제품과 같이 상품에 표시된 者는 실제로는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상품에 스스로가 제조자인 것과 같이 표시를 하였고 또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당연히 表示責任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試案2-(2)-③(제조물의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 EC3-②, ③에서 定하는 「판매, 대여, 리스의 목적하에 EC域內에 제품을 輸入하는 者」와 「제품의 제조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제품의 공급자(수입제품도 동일)」를 제조자로 간주하는 조항이 한국시안에는 별도의 項目으로 設定(法11, 제조자이외의 者의 責任)하고 있으나 法2-②속에 포함시켜 명확한 定義概念을 註入함이 옳을 듯하다.²⁸⁾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법 수퍼 301조와 GATT의 Uruguay Round협상의 진전여하에 따라 국내시장의 개방화가 더욱 加速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2) 無過失責任(法試案3-①)

「자기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他人에게 非通常의 인 위험을 야기시킨 者는 과실이 없어도 그의 기업

27) Restatement of Torts, 2d, 400 「他人에 의해 제조된 動産은 스스로의 제조물로서 表示한 者는 제조와 同一한 責任을 負擔한다.」

28) 일본시안10(製造者 以外の 者의 責任)은 제조자의 準用規定으로서 「제조물의 판매업자 또는 貨貨業者, 제조물에 결함을 일으킨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 제조물에 결함을 일으키거나 점검하여야 할 결함을 간과한 수리업자」등을 포함시킨다.

으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한 責任을 負擔하고 그 危險은 企業의 生産원가에 포함」되어야하는 危險責任論에 기초한 무과실책임을 채택하고 있다.(일본 시안3, EC1) 그러나 EC指針 제1조는 一般論的인 무과실책임을 선언하고 있으나 被害者의 因果關係의 立證責任(EC4), 開發危險(Development risk)등을 배제(EC7-(a)~(f))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일부의 制限的인 要因을 허용하고있다. 그러나 한국시안은 무과실책임의 채택과 함께 「제조물을 유통시킨 時点에 있어서의 科學的, 技術的 水準으로는 당해 결함을 예견할 수 없었다해도 제조자는 그 책임을 負擔」하도록 하는 이른바, 개발위험을 容認하고 있다.(法試案3-②)이에 대하여 EC(7-(e))는 물론 서독의 같은法(1-②-5)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²⁹⁾ 점을 감안할 때 기술도약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분야가 아닌가 한다. 아직은 소비자보호 못지않게 기술혁신 또는 기술개발력의 보호, 즉 국가 산업개발의 전체적인 성장 또한 중요한 몫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국시안에서도 EC와 같은 제한적인 無過失責任理論을 도입하고 아울러 개발위험 등도의약품, 화장품, 식품료품 및 화학제품에 적용하는 등의 순차적인 완화조치가 병행되어야한다. 다만, 이제까지 여기에서 검토해온 바에 의하면 傳統的인 과실책임의 이론이나 契約責任上의 원칙, 또는 이들의 再構成을 통하여는 民事責任의 基本理念인 公平내지는 衡平에 의한 損害의 分配가 불만족한 상

대에서 이루어진 점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懲罰的賠償(punitive damage 法試案7)

1763年 미국이 영국민법을 準用하여 導入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엄격성을 提高하기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지 영국의 경우 징벌적 배상의 기능은 크게 중요시 되지않아 중상, 비방등 명예훼손에 관련되는 형사소송에서만 나타날 뿐 生産物賠償責任과 같은 民事訴訟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징벌적 배상은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不法行爲關聯法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法院이 判決하는 징벌적 배상금은 특별하게 最高限度額이 設定된 바 없으나 一般的으로 損害賠償額의 2倍(statutory multiple damage) 또는 3倍(tripple damage)형태로 나타난다.

모든 法院은 징벌적 배상판결을 내릴때 다른 유사判例를 감안하지만 損害의 정도, 加害行爲의 범죄적성격보다 加害者의 財務狀態가 보다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實例로 Ford Motor Co.는 Ford Pinto사건으로 US3.5백만달러, Goodyear社는 US16.8백만달러의 징벌적배상금을 지불한 例로서 저간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³⁰⁾

한국의 시안제7조에서는 「결함발생에 관하여 故意,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경우, 法院은 無過失責任에 의한 賠償額外에 被害者의 청구에 따라 實損害額의 두배의 範圍內에서 징벌적배상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 제도의 도

29) 一般의 기계제품의 경우 기술혁신이 날로 이루어져 新製品의 증가하고있으나 그렇다 하여 製品에 원래적으로 內在된 危險 또는 결함이 뒷날 신제품에 의하여 밝혀지는 일은 드물것이나 의약품, 化學製品의 경우는 이와 달리 人體의 危害性등이 쉽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만 例外的으로 허용하는 方案이 제기되고 있다.

30) 해의보험정보센터, 《해의보험시장 제302호》, 再保社刊, pp4-5

입 당위성에 대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제조자의 입장으로는 安全對策費用보다 소수의 피해자에게 실손해를 지급하는 방법이 제조자에게 유리하다고 判斷, 製品의 安全性 向上을 게을리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說明이지만 이는 평면적 기우일뿐이다. 또한 무과실책임과의 연대관계문제는 이 제도가 본질적으로 加害行爲의 惡意性, 즉 行爲志向的 또는 主觀的 判斷基準을 요구하는 反面, 무과실책임제도는 제조자의 고의, 과실의 主觀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제조물자체의 결함유무의 物志向的, 客觀的으로 判斷하는 점으로 미루어 사실상 說得力이 약화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現行約款과의 상충문제, 특히 우리나라의 一般的인 民事法理의 정서상 익숙하지 못한 제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³¹⁾

(4) 連帶責任(法試案 4)

「同一한 손해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가 2人以上일때 각자가 그 손해의 全額을 負擔」시킨 점은 民法上(760)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과 脈을 같이 한다. (EC5, 일본시안4)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요즈음처럼 다단계의 제조과정과 유통구조하에서는 加害當事者를 判別, 그 책임을 추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결함제조물의 생산·판매에 관여한 모든 사업자에게 責任을 負擔시키고 어

는 一方 사업자에게 손해액 全額을 청구할 수 있는 連帶責任의 원칙 (joint & several liability)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에 관하여는 分割債權關係를 원칙(民408)으로 하나 여기에서는 이를 배제하여 각 加害當事者의 共同責任으로 連帶賠償케 하는 점이 그러하다.³²⁾ 이같은 원칙은 結果的으로 資力이 있는 제조자에게 매우 不利하게 작용하여 判決全額을 여론이나 동정으로 기울게하는 정책을 보일수 있다. 86年 미국의 Working Group 이 위기극복방안으로 제시한 8개항목에서 이 원칙의 폐해가 지적되는 것은 이른바 deep pocket theory³³⁾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의 이념은 살리되 제조자에 대한 과잉책임부가현상은 스스로 조정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할것같다.

(5) 損害賠償의 履行確報方案(法試案 13)

「特定の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生命, 身體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그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못하며」(法試案12) 「손해배상 조치는 製造物責任保險契約, 製造物責任保證契約 또는 供託」으로 하되 그 金額 등은 大統領令으로 미루어 있다. (法試案13) 대체적으로 한국의 시안은 全體的인 내용으로보아 EC指針과 근접한 거리에 있으나 이 조항은 일본시

31) 우리나라商標法 제37조(손해배상청구)는 상표권침해에 따른 損害額의 산정을 침해한 者의 利益, 상표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利益을 합계한 금액의 3倍限度內에 청구할 수 있도록 例外的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는 目的性이 뚜렷한 商標權의 침해에 관한 것이므로 제조자의 책임추급과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32) 郭潤直, 《債權各論(民法講義Ⅲ, 博英社, p660

33) The "deep pocket" theory has largely prevailed, based upon the producer's and suppliers' supposed ability to sustain economic loss. The theory presumes an infinite ability to obtain liability insurance and to pass on losses to customers. Court decisions have expanded the manufacturer's and seller's liability, even without fault, to a user or consumer of an allegedly harmful product.(The Defence Research Institute, 《Products Liability-Guide for Management》, p7)

안과 흡사하다.

製造物責任에 관한 被害救濟方案으로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을 채용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바이나 保險契約과 供託을 同一線上에서 파악하기에는 구제수단의 본질상 무리라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保證契約은 商法제4편(保險)으로 분류되지않고 行政規制法인 保險業法³⁴⁾에 의하여 別途의 認許를 받아 營爲하는 契約 또는 法令에 따른 채무나 의무의 履行能力, 辨濟能力을 保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主債務者(保險契約者)의 채무를 附從的으로 履行하는 者가 保證人이고(그가 負擔하는 채무는 保證債務)보증채무를 發生케하는 보증계약은 債務者 또는 權利者(被保險者)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하는것을 目的으로한다. (民248) 이를 제조물책임의 追及과 관련하여 볼때 결합제조물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제조자(채무자)의 保證委託契約을 맺고 保證人은 소비자인 債權者에게 그 손해를 代位辨濟한 뒤 채무자에게 求償權을 행사하게되는 것이다. 이런 一聯의 흐름은 이제까지 검토해온 被害救濟의 履行確保方法으로서 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임을 시사하고있다. 또한 法試案에서 언급된 供託制度도 例外는 아니다. 同制度는 사실상의 自家保險型態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 하지 못하리라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결국 가스관련법규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法17)에서 定하는 바와 같이 生産物賠償責任保

險에게 그 소임을 맡길 수밖에 없으리라는 판단은 세계적인 대세로써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IV. 生産物賠償保險의 現況

1. 約款 및 料率體系(88年以前)

일본 賠償責任保險을 준거하여 도입된 同保險(재이보1223, 24-15, 60, 64, 11, 21)은 79年 約款 및 料率體系에 큰 손질을 가한 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수용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一次 改正前에 소개된 生産物賠償責任特約(재이보1223-2326, 67, 12, 30)의 경우 國內外의 經濟的狀況, 또는 소비자의 정서는 이를 수용할 계제가 아니었다. 다만 이같은 60年初에 있었던 特種保險分野의 大量認可조치는 當局이 기획했던 保險商品 질서개편의 일환에 다름아니다. 즉, 火災 및 海上保險에 대한 각사의 무리한 과당경쟁은 여러 폐해를 빚어 내 각사의 판매력을 새로운 市場, 즉 特種保險分野 쪽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인 배려로 해석할 수 있다.

뒤를 이어 ISO 55年 수정약관을 기초로 개발된 영문약관(보험1223-481, 68, 8, 20)은 국문약관과는 달리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生産物賠償責任特約의 경우 제1特約은 ISO(보험1223-121, 75, 2, 3,) 제2特約은 Commercial Union Ins. Co.(보험1223-356, 79, 5, 4) 제3特約은 Shand & Moran Ins. Co.(심의의 520-5231,

34) 保險業法제5조 제1항 「보험사업(매매·고용·都給·기타계약에 의한 義務 또는 法令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며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約定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收受하는 것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은 채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營爲하지 못한다.」

82, 11, 9)의 약관을 준거하여 채용하였다.³⁵⁾ 더우기 特約이 도입된 75年, 79年, 82年은 62年 이래의 경제개발계획이 일정수준에 진입되어 있는 시기상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輸出드라이브政策으로 대변되는 이 時期의 經濟觀은 北美州地域에 대한 폭발적인 輸出伸張을 가져왔으며 輸出生産物에 부수되는 同特約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同特約은 內輸入이라기 보다는 輸出生産物에 그 기저를 두고 있는 屬性上 擔保條件, 保險料率 등이 海外依存의 일 수 밖에 없었으며 保險料率에 관하여는 國內 및 海外再保險者로 부터 구득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求得料率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나라별로 生産物責任에 대한 준거법, 적용되는 법규 및 법원칙이 서로 다르고 법관행 및 변호사사례 형태 등이 또한 서로 달리하여 이를 單一料率로서 制定化하는 일은 사실상 무리다. 더우기 輸出量이 30%~40% 北美州地域에 편재된 상황아래에서는 同特約料率의 管理가 他地域에 비하여 힘겨운 일임엔 틀림없다. 왜냐하면 北美州의 生産物責任法理의 주변여건은 각국의 保險사업자가 주의경보를 내릴 만큼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다.

두차례에 걸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위기에 대하여 미국의 정부 및 보험업계는 그 원인을 保險業界의 경제적 이유(Cash-flow underwriting 등)와 法運營의 非現實性(Deep pocket theory, Robinhood theory, Contingency fee system 등)에 主眼을 두고 그 치유책을 실무 중심으로 보완하는 한편 그 구체

적방안으로서 86年 Claims-made basis policy에 의한 표준약관을 제정, 73年型の 미비점을 대부분 걸러내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대신 Commercial general liability로 전환함과 동시에 Readability, Modernization(Better coverage, Better exclusion), Standardization(Identical coverage), Automation化的 노력을 보인 획기적인 작업으로서 평가 받고 있다.

위와 같은 미국내의 動向은 국내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가져와 國文 및 英文約款의 체질개선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문약관의 경우 約款 및 料率體系의 미흡등으로 사용실적이 거의 없어 商品 개발이나 개정작업이 영문약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80年代들어 同保險의 位相이 격상되는 조짐과 관련, 國內의 小額契約에 이르기까지 英文約款에 의존하고자 하는 業界의 一般의 관행에 대한 自省의 소리와 同保險에 대한 고조되는 사회적 관심을 담을 수 있는 표준약관 및 料率체계의 정비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작업이 86年型 ISO의 표준약관을 모델로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同保險의 國際的인 特性에서 찾을 수 있다.³⁶⁾

2. 改定 約款 및 料率體系(88年以後)

ISO 86年型을 모델로 개발된 英文約款은 87, 5, 31(보험2223-351)로 먼저 인가를 받았으나 뒤이은 國文約款의 인가일시(손보2234-288, 88, 7, 5.)에

35) 1.2의 特約이 Occurrence-Basis Policy(Form No. CG0001 1185), 3의 特約은 Claims-Made Policy(Form No. CG0002 1185), 특히 3의 특약은 담보기준의 속성상 도덕적 위험의 개연, 국제적인 보편성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이의실시를 유보하여왔으나 85년 이래 生産物責任의 위기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써 活用되기 시작함.

36) 奇弘哲, <賠償責任保險制度和 保險約款의 運用>, 保險調査月報 pp22-26

맞추어 使用토록 권고된 바 있다. 따라서 개정 國英文約款은 同保險이 이땅에 도입된 이래 실로 30餘年만에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구각을 벗고 國際的인時流에 동승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1) 國文約款 및 料率體系

營業賠償責任保險 보통약관은 모든 危險에 대한 보편적 사항을 기술하는데 그치고 個個의 危險은 特別約款에 위임하는 이른바 Rider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生産物危險을 保險加入하고자하는 경우 보통약관에 生産物특별약관을 첨부하며 同約款의 담보기준에 따라 같은 유형의 추가특약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종래에는 손해사고담보 기준(Occurrence basis)이 일반적 형태였으나 이를 배상청구담보기준(Claims-made basis)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Vendor's endorsement 및 Concessionaire endorsement등의 영문약관특약을 판매인 추가특약, 명의사용인 추가특약 등으로 國文約款의 영역을 크게 넓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종래에 同危險에 대한 國英文약관 사이에 담보범위, 면책조항 등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 실무상의 여러 난점을 야기시킨 점을 고려, 이의 해소방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³⁷⁾

國文約款이 英文約款과의 保險조건 등을 접근시키려는 여러방안이 강구되었듯이 保險料率體系 및 水

準에서도 이러한 시도, 즉 一元化의 과정이 광범위하게 제시된 바 있다. 料率體系面에서 여러 선진기법의 도입, 料率水準面에서 求得料率(영문약관요율)에 거의 접근하는 再保險者의 料率을 일정한 여과를 통하여 전면 수용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의 25개 특약중 9개 특약요율만을 協定料率化한 점(특히 生産物특별약관요율을 협정요율에서 배제시킨 점), 보상한도액 10억원이하로 제한한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³⁸⁾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영문약관의 사용을 제한하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火災保險처럼 國英文約款에 따른 料率水準의 격차가 크게나는 상태는 아니어도 두약관의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의 限界를 設定하는 일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또한 보상한도액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협정요율화된 9개특약 외에 나머지 16개특약에 대한 점진적인 협정요율화의 추진은 향후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 英文約款 및 料率體系

ISO 73年型 표준약관은 Policy jacket에 Product/Completed operations coverage part를 附帶하는 危險別 특별약관담보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86年 개

37) 國文約款의 生産物特約

1. 손해사고기준, 가. 生産物특별약관 나. 판매인추가특별약관 다. 명의사용인추가특별약관
2. 배상청구기준, 가. 나. 다=위와 동일

38) 88.7.5 인가당시 協定料率에서 배제된 特殊危險의 基準

- (1) 保險料 算出基礎가 可變的이거나 任意性이 있는 種目(賣出額, 賃金, 輸出金額, 入場者 등)→生産物賠償責任 등
- (2) 過去의 實績이 지극히 不良하거나 事故의 頻度가 多發의이어서 料率의 彈力性이 要請되는 種目→船舶修理業者, 항만하역업자 등
- (3) 危險의 測定이 事實上不可能하여 料率의 協定化가 곤란하거나 料率算定상 多技化하는 技法이 要求되는 種目→發注者 미필적 賠償責任, 契約上加重責任, 汚染事故擔保, 人格侵害擔保 등

정형에서는 企業의 全危險을 담보하는 包括擔保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생산물위험에 한하여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생산물위험을 담보하는 경우)로 인수하거나 생산물위험을 포함하여 기업의 모든 위험을 포괄담보하는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로 인수하도록 구성했다.³⁹⁾

위 개정약관을 준거하여 개발된 영문약관(87.5.21)은 ISO Form을 대부분 수용하되 위의 39)에서 밝힌 6가지 구성체계를 Product liability declaration page 및 Product liability coverage form으로 부분 조정, 도입한점이 달리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손해 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Introductory Section

② Section I-Coverages

- Bodily injury &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ing agreement, exclusion
- Supplementary payments

③ Section II-who is An Insured

④ Section III-Limits of Insurance

⑤ Section IV-Terms & Conditions

⑥ Section V-Extended reporting period
(Claims-made)

⑦ Section VI-Definitions

90사업년도 배상책임보험 再保險特約書는 再保險特約限度額을 1,000萬불로 劃定한 반면 생산물위

험에 관한 한도액은 200萬불로서 별도 제시하고 있다.(제3조「特約의 限度額」) 이같은 별도의 규정 에 의하여 생산물위험의 한도액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北美州地域의 同危險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정립되지 못한 결과로써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北美州地域의 공포 또는 기피 현상이 비단 어느 특정지역위험으로 국한되지 않고 기타 다른 지역, 심지어는 국내지역으로까지 확산 될 경우 同保險의 황폐화현상의 초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문약관에 따른 보험요율은 「화재 및 특종보험의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또는 재무부인가조치(배상책임보험기초서류일부변경인가 손보2234-498, 88, 11, 11)에 의하여 再保險者로부터 구득된 요율을 사용하며 재보험자는 국내보유한도액내의 위험 단위별로 대부분의 보험요율을 자체 생산한다. 또한 국문약관요율(비협정요율화위험)과 영문약관요율을 평면상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산정하지않고 동일 위험선상에서 평준화된 요율을 제시하기 때문에 兩者間の 가격차등해소에 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산물위험에 대한 協定料率을 유보한 배경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保險料의 算出基礎가 되는 매출액의 可變性에 있었다. 물론 초기단계의 시장질서를 감안한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과감한 대응조치의 수반은 필수적인 時流인 듯하다. 保險料率이 어느 단일의 청구에

39) 86년형 ISO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구성체계(「개정된 미국의 86년 배상책임 보험증권 I」 손해보협자료 No.187,186 손해보험협회 pp14-15)

①common policy declarations form ②common policy conditions form ③products liability declaration page ④products liability conditions form ⑤products liability coverage form(includes above ④conditions) ⑥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exdorsement(broad form)

서 每危險別로 제시되는 현상은 그 위험에 대한 정확한 分析, 예컨대 개별적인 위험도평가, 과거 사고에 대한 실적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산출하는 실리는 취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의 편의성에 무게를 둔 임시적인 조치임을 새삼 명심해둘 일이다.

3. 約款上 主要免責危險에 대한 점검

賠償請求基準이든 損害事故基準이든 현행 國文約款상의 免責危險은 13個種으로 구성된다. 이는 모든 손해보험영역에서 同一하게 적용하는 絶對的免責危險(4-①, ②, ③, ④), 保險特質上的 면책위험(4-⑤~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이중에서 4-⑤(加重責任), 4-⑪(回收費用), 4-⑬(벌과금 및 징벌적손해)등은 별도의 제도로써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東京海上保險(주)과 日產火災保險(주)이 共同으로 개발, 90.6.15부터 시판에 들어간「生産物回收保險」을 지적할 수 있다.) 이 保險의 主要한 中心概念은 生産物の 範圍, 被保險者の 要件, 擔保하는 內容과 免責危險을 제외한 분야는 여러곳에서 그 의미를 상술하는 바가 많으나 免責危險에 대하여는 소홀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 시안의 정확한 실상의 파악을 위하여는 면책위험의 올바른 진단과 평가가 무엇보다 우선될 주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보험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射倖契約이다. 이같은 契約下의 보험사고는 契約者個個人の 입장에서 볼때

偶發的인 현상으로 인지하기 쉬우나 全體的인 構圖下에서 보면 일정한 사고발생의 蓋然率을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의 개연율을 측정한 大數의 法則에 의하여 保險料와 保險給與의 收支相等을 유지시키는 등 保險企業을 과학적인 기초위에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와같은 前提를 파괴하는 一定한 事由에 대하여는 法律上 또는 契約上 保險者の 保險金 지급책임을 免除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의 일정행위를 견제하고 아울러 보험사업자를 보호하여 보험기업의 원활한 유지를 도모한다.⁴⁰⁾ 결국 모든 損害保險은 그 保險의 特質上 반드시 제어할 수밖에 없는 免責危險이 있기 마련이며 아래에서 제시한 主要免責危險, 또한 그러한 맥락하에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1) 生産物自體의 損害

生産物の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生産物自體의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同特約4-⑩)은 保險事業者의 免責(商法678)으로서 이는 결합있는 제품의 교환비용 또는 결합있는 業務(工事, 作業)의 수리비용을 擔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위에서 언급한「生産物自體」는 保險의 對象으로 하는 當該生産物 全體를 총칭한다. 예컨대 生産物이 自動車라고 할 때 自動車의 一部인 브레이크의 결합에 의하여 자동차가 충돌하면서 운전자와 자동차가 同時에 事故를 입었다면 운전자에 대한 損害배상은 成立될 수 있으나 자동차 자체의 破損에 따른 損害는 免責으로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保險加入對象인 生産物이 어느 一定의 部品일 때는「生産物自體」가 어느 一定의 部品만을 가리키

40) 양승규외. 《商法要論》, 三英社, 178, pp393-394

게되며 이 경우 브레이크 부품 부분을 제외한 自動車의 파손손해는 有責으로 인식된다.⁴¹⁾

이와같이 生産物自體의 損害와 그로 인한 使用損失은 이를 不擔保하나 이러한 危險의 擔保를 위하여는 product itself insurance라는 제도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重大한 과실로 法令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生産물로 생긴 손해

保險契約의 기본윤리성은 신의성실의 원칙(民法2)에 그 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故意로 야기시킨 保險事故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善良한 風俗등의 사회질서(民法103)에 反하므로 이에대한 免責規定은 다른 의견을 구할 수 없으나 生産物危險에 관하여 商法에서 定하는 바대로 「故意 또는 重過失」에 이르기까지 強행적인 免責으로 擴大하는 경향은 再考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商法659)

被害者救濟機能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근의 責任保險에서는 증과실에 의한 保險事故에 대하여도 保險事業者의 有責으로 하는 傾向이 있으며⁴²⁾ 이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近來 重過失로 인한 사고가 漸増하는 점, 이 保險의 屬性上 굳이 重過失로 인한 사고를 배제할 理由에 대하여 설득력을 상실하는 점과 輕過失과 증과실의 概念區分이 不明確한 점⁴³⁾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改正國文約款인 施設所有(管理)者特約이나 都給業者特約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損害」에서 重過失與否

를 묻지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商法の 規定(659-①)은 보험의 본질상 인정되는 원칙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射倖性 등에 의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출발되었으며 특히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그것이 公序良俗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反하지 않을 때는 이를 배제하는 方案, 즉 商法제659조①의 但書로서 追加하거나 同危險에 대한 特別法등의 제정시 강구될 사항으로 파악된다.⁴⁴⁾

(3) 결함있는 生産물의 回收費用

시장에 유통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고(또는 이에 관한 保證이 있을 때)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현실화되거나 또는 當該 결함으로부터 同種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被保險者는 同種事故의 再發防止를 위하여 一聯의 제품에 대한 回收, 검사, 점검, 수리 및 교환 등을 하게 된다. 이같은 回收 등에 따른 費用(회수에 따른 광고비, 회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나 회수에 수반하여 제3자로부터 요구받은 손해배상금(소비자가 회수대상제품의 使用不能으로 기인하는 損害)등은 免責으로 한다. 종래에는 이를 姊妹舟免責條項(Sistership exclusion clause)으로 규제하여 被保險者의 제품이 他製品의 部品으로 사용되고 그 部品の 결함으로 인하여 他제품을 회수하는 경우의 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특히 근래에는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가난감, 자동차 등 人體에 本來的으로 有害할 가

41) 早崎健, op. cit, ppl43-144

42) 保險契約法152, 梁承圭外, op. cit, p395

43) 野田良之, <フランスの責任保險法Ⅱ>, 《法學協會 56》, No2, p309

44) 金善政, 《製造物損害賠償責任保險研究》, 高麗大 碩士學位論文, 182 p65

능성이 큰 결함있는 製品은 관련되는 법규에서 반드시 回收하도록 규제하고 있다.⁴⁵⁾

이같은 回收費用을 全面的으로 통제하는 이유는 첫째, 回收費用은 간접적 손해방지비용의 일환으로써 피보험자 자신의 비용아래 사고의 예방에 힘써야 하는 당연의무이며 둘째, 回收費用이 담보되는 경우 製品의 판매가 부진하거나 新製品의 發賣로 製品을 회수하고자 할 때 기존제품의 결함을 表面上 理由를 내세워 회수하는 등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일단 回收가 이루어지면 이와 관련되는費用은 규모가 커 이를 計測하여 保險費用化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나 商法제680조에서는 被保險者에게 손해방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자에게는 이를 위하여 必要 또는 有益한 費用을 有責(보통 약관3-②-②도 이와같음)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를 補完하는 方案, 예컨대 外國에서 보는 product recall insurance등의 商品개발을 서두를 필요성이 대두된다.

(4) 懲罰的損害(punitive damage)

징벌적배상제도는 被害者(원고)의 損害를 填補하기보다는 加害者의 不法行爲의 惡性(misbehavior)에 制裁를 加하고 이를 통하여 불법

행위의 再發을 억제하기위한 수단으로 동원된다. 따라서 배상금은 어느 一定의 法律的 기준에 의하여 算定되지않고 배심원이나 당해판사가 경제적손해 이외에 加害者의 「wanton and wilful disregard of…」 또는 「outrageous or antisocial」한 행위를 罰함과 동시에 被害者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追加的으로 지급토록 판결하는 금액이며 이 제도는 영미법에서만 인정되는 特有의 제도이다.⁴⁷⁾

判決金額에 있어서 자의성의 완화방안으로 제조물책임모델법 120-13항에서 8가지의 배상액결정요인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첫째, 형사법과 같은 보호조치를 결여하고 있을 뿐아니라 실질손해의 전보라는 民事法 目的과도 배치되고 둘째, 피해자에게 뜻밖의 횡재를 안겨 주고 셋째, 責任의 有無나 그 금액을 결정하는 뚜렷한 규정이 없으며 넷째, 유사행위의 제발억지효과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⁴⁸⁾

(5) 約款上的 加重責任(contractual liability)

被保險者가 제3자와의 계약에 부대하여 契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여 負擔키로 하는 加重責任은 一般的으로 免責으로 규정한다. 賠償責任保險은 法律上的 賠償責任만을 擔保하

45) 우리나라의 藥師法施行規則 제16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그 결과 부적당할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제품을 자진하여 회수하고…」

46) 魯東表, op. cit., p91

47) 미국의 경우 州마다 이제도의 취급을 달리하고있으나 이를 아래와 같이 5가지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①法律이나 判決에 의하여 허용하지 않는 州 ②법률이나 판결로써 허용하며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이를 담보하도록 판시하는 州 ③법률이나 판결로써 인정은하되 公共政策上 보험에서는 不擔保로 하는 州 ④一部 制限된 경우 보험에서만 인정하는 州 ⑤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州

48) 李相程外, op. cit., pp90-91

며 당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法律規定上 他人의 손해배상책임은 예기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의 방지, 위험측정의 곤란 등에 의하여 이를 免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영문증권은 계약상의 가중책임이지만 社會慣習上 法律上的 배상책임과 같은 附隨契約 (Incidental contract→Insured contract)은 例外的으로 擔保하고 있다.⁴⁹⁾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社會的 관습이 없기 때문에 例外的으로 담보하는 계약상의 加重責任은 없다. 다만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契約當事者의 一方으로서 保險契約의 同等한 地位를 요구하거나(Additional insured) 加重責任을 引受케 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실무상 Save harmless clause 또는 Hold harmless clause라고 하며, 이는 責任이 전가되는 比重에 따라 Limited form, Broad form 또는 Intermediate form등으로 달리 구분하고 있다.

V. 活性化를 위한 모델의 定立

1. 保險料率 水準의 決定方案

1910년에 이르러 發賣되기⁵⁰⁾ 시작한 미국의 同保險約款 및 料率體系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規範的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6개 요율산출기관과 서비스기관을 統合하여 71年 창설된 Insurance Services Office(ISO)가 제시

한 「Manual of Liability Insurance」는 한국 및 일본의 요율체계 및 요율수준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온 바 있다. 동보험의 요율체계는 1,500餘의 製造物品 目別로 分類되며 요율수준은 Manual rate와 Advisory rate로 區分하여 제시한다.

例컨데(A)rate인 Automobile의 경우 16個의 中小分類로 多元化하여 표시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을 包括하되 개개의 보험요율은 위임 또는 권고형태를 가진다.

1952年 동경해상보험(주)에서 National Bureau of Casualty Underwriters가 發刊한 Manual을 토대로 작성한 요율체계 및 요율수준이 일본의 효시가 된다. 72年 5月 종래의 料率區分을(製造物의 品目分類) 一部整理, 統合하고 아울러 新設될 新商品에 대하여는 ISO의 Manual에 의거 被保險者의 형태에 따라 4가지(①제조업:요율구분코드 01-33, ②제조·판매업:요율구분코드 51-54, ③판매업:요율구분코드 55-63, ④완료작업:요율구분코드 71-84)로 분류하고 料率部問은 종래의 요율을 답습하거나 종래의 인가요율을 인수경험에 비추어 수정 보완하는 반면, 新商品에 대하여는 ISO의 요율을 전반적으로 수용하였다.⁵¹⁾

前述한대로 우리나라는 88. 7월 大幅的인 정비작업을 마친 國文約款에 따른 協定料率의 整地作業은 아예 방기되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內輸製造物中心의 國文約款이거나 輸出製造物 中心의 英文約款을 不問하고 모든 料率은 國內 再保險者로부터 求

49)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I) Section v.(Definitions)-5: Insured contract. ①시설의 임대차계약 ②철도부설사용 계약 ③地域權約定 및 사용권계약 ④엘리베이터 유지수선계약 ⑤法令에 의한 공공기관의 손해배상계약 등

50) 高平錫, 《責任保險契約의 法的構造에 관한연구》, 成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89, p24

51) 大羽宏一, <新種, 自動車保險講座I>, 일본평론사. p102

得되어 사용된다.

또한 保險契約締結은 반드시 再保險者⁵²⁾에게 當該生産物에 대한 料率을 문의(Rate-Quotation)하고 同危險에 따른 요율이 제시된 후에야 가능하다. 81年 同保險의 再保險特約이 있기까지는 國內保險社로부터 발의된 모든 料率은 國內再保險者가 海外再保險者에게 구독하여 國內社에 전파하는 방법이었으나 再保險特約이 체결됨에 따라 200萬불 以下(補償限度額基準)의 契約은 再保險者の Manual에 의한 自家生産能力을 갖추게 되었다.

初期的 일본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ISO의 요율을 全面的으로 수용하되 미국의 法背景(Legal background)과의 相異點을 해소하기 위하여 30%~50%의 편차(Deviation)를 두어 접근하였다. 상품의 구분은 一定한 統一的인 기준에 의하기 보다는 契約發生에 비중을 두는 편의적인 분류인바 이를 약150餘種으로 細分化시키고 기본보상한도액은 對人賠償의 경우/事故當/總補償限度額 500만 원, 對物賠償의 경우/事故當/總補償限度額 200만 원으로 策定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輸出商品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ISO의 料率과 American insurance Underwriters Rate Manual의 할증계수(Increased Table)를 준용하여 실무상 적용한다.

賠償責任保險의 擔保領域은 당해국가의 賠償責任法理를 담아내는 그릇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擔保範圍를 劃定하는 約款은 製造物責任이 發生하는 나라의 法的背景과 具體的인 同質性을 확보하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심의 製

造物責任法試案이 현실화된다면 同保險의 擔保영역은 마땅히 同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하도록 구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현재 약관에서 免責危險으로 하는 부분과 同法の 規定과의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되어야 하며 그것은 保險內在的 여러 要因을 감안하여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料率水準의 결정은 참으로 난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一般的으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料率算出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商品의 非安全性에 의한 損害推算式($\$risk = PF \times PA \times 0.05 \times 0.5 \times \r)과 이를 準用한 「 $PF \times PA \times \alpha \times \beta \times c$ 」과 같은 공식을 유도하여 商品 1單位當의 保險料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무상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통계적인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통계자체의 구독불능이 대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長期間에 걸쳐 同質性을 유지한 채 多量으로 공급되는 商品이라면 결합이나 신체사고통계에 어느정도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흔치않는 일이다. 또한 商品의 결합사고는 다른 損害保險의 事故와는 달리 反復的으로 發生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 이는 결합상품이 발견되면 바로 回收 또는 改善되기 때문에 事故統計의 계속성이 결여되는 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⁵³⁾

52年 일본이 미국의 요율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시험요율체제로서 出發하고 그 뒤 72년에 이르러서야 그간의 경험통계로서 보완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國內再保險者の 內需生産物 Manual料率에서도 확인

52) 여기에서의 再保險者란 大韓再保險株式會社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53) PF: 製品의 不良確率 PA: 製品에 의한 事故發生確率 α : 事故후 訴訟이 제기될 確率 β : 製造者가 訴訟될 確率 c: 判決賠償額, <日産火災編, 《賠償責任保險の理論と實務》, 海文堂, pp89-90>

된다. 再保險者의 Manual料率は 76年 ISO料率을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再構成 하였고 이는 81. 1.1부터 發效된 同保險 再保險特約에 의해 具體化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이후 83年(4.1), 85年(10.31)의 두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은 76年 이래의 過去실적을 기초로 하는 料率水準의 現實化作業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의 現行料率이 미국 ISO의 料率일 수 없듯이 비록 뿌리는 ISO料率에 두고 있으나 過去 10餘年の 實績統計로서 補完된 再保險者의 料率は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固有料率화된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의 展開는 지난 88年 7월에 認可된 施設所有(管理)者特約料率 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관계당국에서 認許된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輸出生産物에 대한 요율은 현행과 같이 再保險者의 提示料率을 사용하되 內需生産物에 관한 요율은 再保險者의 Manual料率을 大幅 수용하여 協定化하는 方法을 택할 수 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성싶다.

2 保險料率體系의 確立方案

이 保險의 中心概念인 製造物은 加工되지 않는 농업, 목축업, 어업 및 수렵업에 의한 産物을 제외한 모든 動産을 뜻한다. (한국시안2, 일본시안2, EC 지침2) 따라서 料率體系의 整立問題는 기실 위에서 말한 4개업종의 産物을 제외한 모든 동산제품을 어떠한 統一基準아래 적절하게 分類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인 문화양태가 매우 흡사한 일본의 경우 生産物責任에 대하여 50餘種의 中分類, 작업의 결과책임에 대하여 15類의 分類形態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分類方式은 일본

의 경제력에 비하여 볼 때 結集度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빚어지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危險區分明細表」와 코드번호49(기타제조), 99(기타작업결과위험)등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補完作業이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保險開發院이 작성한 보통상해보험의 産業別 職種級別分類表(87.12.31인가)는 경제기획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勞動部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준거하여 작성한 바 있다. 大分類와 中分類는 産業中心으로 區分하고 이에 따르는 3종류의 직종급별의 구분은 직업중심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산업과 직업을 연계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87年以前의 分類表는 단순히 직업중심이었기 때문에 직업간에 중첩 또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고 一定한 統一基準에 의하여 작성되지않아 실무상의 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이 整立되어야 할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제조물별 分類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시도해봄직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각 제조물에 따른 표준화된 분류표는 없기때문에 國際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CCCN이거나 HS분류방식을 준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상해보험은 保險의 主體와 예상사고지역이 국내에 국한되기가 대부분이지만 다루고자하는 保險은 國際性を 지닌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關稅協力理事會(Customs Co-operation Council:CCC)가 작성한 HS商品分類制度(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CCCN을 근간으로 하되 기존의 여러 상품분류방식⁵⁴⁾을 흡수, 보완한 새로운 國際商品分類方式이다. 이는 83년 6월 Brussel에서 열린 CCC 제

54) 關稅: CCCN, 貿易: SITC, 항공: WACCC 등으로 각각 달리 분류 할 뿐아니라 특히 관세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의 주요국은 CCCN대신 TSUSA, CTC등의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國家 및 産業部門別로 상이한 제도로 영위된 바 있다.

61/62次 總會에서 「Harmonized System 에 대한 協約」을 채택하고 84年末까지 「H.S Explanatory Notes」을 완성케 함으로써 87.1.1부터 전세계적으로 同時 施行케된 것이다.⁵⁵⁾ H.S제도는 21部, 97類, 6, 250號(4單位: 1, 241號, 6單位: 5, 019號)로 구성된 대단히 방대한 分類制度이지만 同保險에서 借用하고자하는 부분은 21部中 10部, 97類中 50類, 6, 250號中 2,000號로서 充分하리라는 판단이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및 EC指針 제2조에서 規定한 대로의 製造物을 對象으로 그 범위를 축약시킨다면 部, 類 및 號의 內容은 더욱 간이하게 농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CCCN은 그 用途가 關稅에 局限시켜 適用하였으나 現行 HS는 關稅는 물론 貿易, 運送, 保險 및 倉庫分野에까지 아우르고 있기때문에 積荷保險의 品目分類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셈이다. 따라서 生産物賠償保險과 積荷保險에서 HS 方式을 따르게 된다면 첫째, 分類原則 또는 해석기준의 확실한 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品目群別로 代表的인 品目を 例示하는 경우(現在의 積荷保險, 일본의 生産物賠償責任保險) 例示되는 品目(또는 신개발상품)의 소속군 결정의 애매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셋째, 관세를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이들 기관에서 작성되는 통계를 아울러 活用하거나 比較分析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HS제도는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그것과 同質의 동우리일 수는 없다. 따라서 HS 제도에 ISO와 일본의 체계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는 현실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VI. 結語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社會保險인 産業災害補償保險은 常時 500人以上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鑛業 및 製造業을 對象으로 65년 7월부터 실시한 이래 16차례의 改正(同法 施行令)을 거친 현재(88년 1월)에 이르러는 常時使用 勤勞者數가 5人以上인 사업장으로 擴大, 適用하고 있다. 60年代의 척박한 토양에 뿌리를 내린 產災保險은 이제 醫療保險과 더불어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兩大支主로서 떠받들리고 있으며 年次的으로 그 內實을 더욱 擴大改編하여 社會保障의 개념까지 도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작성, 경제기획원에 立法建議한 「제조물책임법」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甲論과 乙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82.2월의 제110회 임시국회에 同法案을 上程한 前例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時期尙早論을 再論할 必要는 아니다. 다시금 시기상조론이 거론된다면 全面的인 실시에 앞서 1次的으로 食飲料品, 의약품, 自動車製品 등과 같이 결합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有害할 가능성이 큰 분야부터 실시하고 年次的로 擴大實施하는 方案, 또는 「검」, 「품」, 및 「電」字 表示의 우량제품을 제외한 製造物부터 실시하는 方案 등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시장에 있어서의 賠償責任保險의 占有比(88年基準)는 9.4%, 일본의 경우 2.4%를 보이는 反面, 우리나라(88年基準)는 0.85%로서 매우 저조한

55) 財務部 關稅局, 《新國際統一商品分類體系 8單位細分類》, 83.12月 참조

보급율을 나타내고 있다.⁵⁶⁾ 그러나 社會一般에서 보이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身體的 危害反應은 민감하여 危害發生率, 危害發生商品도 일부품목에 중첩되지 않고 다양한 양태로서 나타는 특징을 지우고 있다. 즉 전체조사대상가구(1,999家口)중 421家口(21.2%)에서 449건의 身體的 危害事例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62.4%가 제조자에게 항의 또는 고발조치하는 강경입장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危害商品別로는 食飲料品(29.8%), 醫藥品·衛生用品(23.4%), 廚房用品(15.1%), 家電製品(10.5%), 衣類·장신구(7.1%), 自動車(7.1%)등으로 그 發生順位가 기록되며 특히 食飲料品の 경우 다른 食飲料品の 경우 다른 商品群보다 同一商品으로 인하여多數의 被害者가 集團的으로 발생하는 등 제조자와 소비자간의 새로운 질서정립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읽을 수 있다.⁵⁷⁾

EC加盟國들의 立法化 動向에 대하여 미국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벗고자하는 옷을 그들은 왜 꺼입으려 하는지 모르겠다.」⁵⁸⁾는 냉소가 있었으나 지금 우리나라의 試案은(無過失責任과 懲罰的賠償制度를 제외함) 基本的인 事項만을 規律하고 있으며 國際的 統一化 추세에따라 EC指針과 그 흐름

을 같이 하도록 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물론 여기에서는 同法이 실현화될 경우 사회·경제적, 특히 산업계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홀려보낼 수만은 없다. 즉 產業界에 과도한 責任이 부과되어 투자 의욕이 상실되고 기술개발과 안전성확보에 따른 生産單價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不必要한 訴訟의 증가와 지나친 生産物責任의 追及으로 社會的 非能率을 야기시키는 등의 부정적요인을 一定線에서 묶어두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⁵⁹⁾

이를 위하여 本考에서 지적하였듯이 無過失責任의 完化(대체적으로 EC指針의 수준까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당분간 유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合理的이고 적정한 보험요율수준의 결정방안과 보험체계의 정립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모든 방안은 製造物責任法의 發效를 겨냥하는 조치만은 아니다. 同法의 發效以前이라도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料率體系 및 이에따른 料率水準은 再保險者의 窓口에서 벗어나 協定化의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의 製造物責任法試案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뿐아니라 保險의 社會的 義務를 다하는 첩경이라 믿기 때문인 것이다.

56) ①미국 : 19,077,182,000\$(General liability)/202,014,698,000\$(Total all lines), Fact book I.I.I

②일본 : 155,534,675,000¥ 6,430,794,302,000¥, 保險年鑑, 保險研究會('88)

③한국 : 15,760,568,000원/1,885,737,707,000원 保險開發院, 保險統計年報 및 '89檢證報告書

57) 한국소비자보호원, 《消費者危害實態및 安全意識》. 89, pp13-25

58) 李相程外. op. cit. p63

59) 金奎承, 《對美輸出 生産物責任制度에 관한 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P.57